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개발 비계공이 공사현장에서 ○○운수(주)의 파일하차 작업을 도와 주다가 상병명 “1)좌측 경골 분골골절, 2)좌측 비골골절, 3)좌측하지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89-95호 89. 4. 17. 취소)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동

원처분청 : 대구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개발

### 주 문

대구지방노동청장이 1988. 12. 14. 자 “이○○”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

사 청구취지는 대구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2. 14.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 이○○은 ○○개발소속 비계공으로 작업 중 1988. 11. 1 ○○주택 ○○맨손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일하차 작업을 도와주다 파일에 치어 피재되어 상병명 “1)좌측 경골 분절골절, 2)좌측 비골골절, 3)좌측하지 열상”으로 원처분청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는 ○○개발의 향타기 고장으로 청구인 등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같은 현장에 사용할 위 파일을 신고 온 ○○운수(주)소속 운전자 박○○의 개인 부락을 받고 임의로 파일작업을 하다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운수(주)는 ○○개발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신속성과 관련하여 평소에 회사대표 안○○의 지시에 따라 파일하차 작업을 조력해주고 있으므로 당일도 그러한 입장에서 작업을 하다 피재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  
(1989. 3. 이○○)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3. 6. 대구지방노동청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9. 2. 14. 홍○○)
4. 요양 신청서 사본  
(1988. 11. 11. 대구지방노동청장)
5.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 사본  
(1988. 12. 14. 대구지방노동청장)
6. 재해조사 보고서  
(1988. 12. 13. 행정주사 김○○)
7. 문답서  
(1988. 12. 9. 이○○, 12. 10. 회사대표 안○○)
8. 사실확인 자문서  
(1989. 2. 박○○, 회사대표 안○○)
9. 확인서  
(1989. 2. 25. 토목기사 문○○, 근로자 은○○, 근로자 김○○, 근로자 박○○)
10. 재심사 청구 사건 보완자료 전달(대구지방노동청장)  
첨부서류:문답서:1989. 4. 14. 회사대표 안○○  
문답서:1989. 4. 15. 근로자 이○○
11. 자술서(1989. 2. ○○개발대표 안○○)
12. 자술서(1989. 4. 14. 문○○ 황○○ 은○○ 김○○ 박○○)
13.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개발 소속 비계공으로서

작업중 1988. 11. 1 ○○주택맨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일하차 작업을 도와 주다 파일에 치어서 피재되어 상병명 "1)좌측경골 분절골절, 2)좌측 비골골절, 3)좌측 하지 열상"으로 원처분청에 요양급여를 청구 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는 ○○개발의 향타기 고장으로 청구인 등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같은 현장에 사용할 위 타일을 신고온 ○○운수(주)소속 운전사 박○○의 개인 부탁을 받고 임의로 파일 작업을 하다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적용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대표 안○○이 ○○운수(주)에서 파일을 실어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에서는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소 회사가 근로자에게 조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바 이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리하건대,

첫째 : 회사대표 안○○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저술내용이나 사실조사 결과를 검토한바 ○○운수(주)에서 파일이 신축공사장에 도착하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하차를 하도록 평소 ○○개발 대표인 안○○이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둘째 : 피재근로자 이○○은 1988. 11. 1. 신축공사장에서 ○○운수(주)소속 파일 적재차량이 도착되자 그 당시는 적재차량에 운전조수가 동승하지 않아 파일하차에 어려움이 있어 동 차량 운전사인 박○○가 파일하차 작업의 조력요청을 하므로 평소 회사대표의 지시에 따라 조력 작업중 피재된 사실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아 피재자 이○○의 경우는 파일하차 작업은 ○○개발 회사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않으나 동 파일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게 되므로 작업상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을 위하여 회사대표의 지시에 따라 평소 파일하차 작업에 협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재당일도 파일하차 작업에 종사하다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사용자 지배관리하에서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